



PwC 베트남 뉴스레터

# 사전가격합의제도(APA) 적용에 관한 시행규칙 초안

2026년 6월





# 개요

베트남 재무부는 시행규칙 초안("Draft Circular")을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해 발표하였습니다. 본 초안은 이중과세방지협정(DTA) 관련 시행규칙 제205/2013호, 사전가격합의제도(APA) 관련 시행규칙 제45/2021호, 그리고 상호합의절차(MAP)와 관련된 시행규칙 제80/2021호상의 규정을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DTA, MAP 및 APA에 대한 지침을 하나의 규제 체계로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뉴스레터는 시행규칙 초안에 따른 APA 관련 주요 변경 사항 및 개선 사항과, 추가 명확화 및 검토가 필요한 영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및 개선 사항



시행규칙 초안은 APA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긍정적인 변경 사항 및 개선 사항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 01 APA 심사 과정에서 과세당국 간 역할과 책임의 보다 효율적인 분담

시행규칙 초안은 APA 절차에서 과세당국 간 역할 분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세당국 (Tax Department)은 쌍방 및 다자간 APA의 처리를 총괄하며, 지방세무당국 및 전문 하위 세무부서(대기업, 전자상거래)는 이행 및 준수 여부를 관리합니다. 복잡한 사안은 재무부로 상향 보고됩니다. 또한 일방 APA 신청의 경우, 국세당국은 관련 세무기관에 심사 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 내 APA 절차를 보다 효율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적 복잡성이 완화되고 승인 소요 기간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재무부에서 국세당국으로 승인 권한이 이전되면서, 절차의 효율성과 유연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02 APA 신청의 전자 제출 도입

현재 APA 신청서는 종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납세자에게 행정적 부담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 초안에 따르면, APA 신청서는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보다 간소화된 제출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납세자가 제출 절차를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 제출에 수반되는 부담도 상당 부분 줄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재무부 및 과세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보다 광범위한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과도 부합합니다.

## 03 번역 부담 완화

현행 규정과 마찬가지로, APA 신청 서류는 여전히 베트남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쌍방 또는 다자간 APA의 경우에는 신청 서류를 베트남어로 제출하되, 영어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다른 언어로 작성된 원본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베트남어(그리고 쌍방/다자간 APA의 경우 영어까지)로 번역해야 합니다. 또한 번역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초안에서는 번역과 관련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다 실무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한 점이 주목됩니다. 즉, 증빙 서류의 분량이 너무 방대하여 전체를 모두 번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자가 베트남어 요약본, 설명자료, 그리고 과세당국이 해당 문서를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향후 추가 검토가 필요한 쟁점



시행규칙 초안은 여러 긍정적인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OECD 가이드라인과 역내 관행 등 국제 기준에 보다 부합하는 견고한 APA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명확화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 01 APA 유효 기간 및 롤백 (roll-back) 제도

APA의 최대 적용 기간은 여전히 3개 과세연도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많은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기간이나 OECD 가이드라인과 비교할 때 다소 짧은 편입니다. 또한 시행규칙 초안에는 APA 롤백(rollback) 제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 일본, 한국 및 여러 유럽 국가 등 다수의 관할 지역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한은 실무상 기업의 필요를 반영하는 데 있어 APA 제도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다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제 관행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납세자에게 보다 큰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APA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롤백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02 APA 대상 기간 만료 시 협의 절차 중단

시행규칙 초안에 따르면, 제안된 APA 대상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당사자 간 APA 조건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과세당국은 해당 APA 신청에 대한 심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실무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APA를 통해 적용받고자 했던 과세연도에 대해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초안상으로는, 대상 기간 만료 시점에도 여전히 협의를 진행 중인 기존 신청 건이 새로운 신청 건과 병행하여 계속 검토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상 혼선을 줄이고, APA를 추진하는 납세자에게 보다 높은 연속성과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과세당국 차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 03 각 단계별 구체적인 처리 기한

기존 규정과 비교할 때, 시행규칙 초안은 심사 절차의 각 단계에 대해 구체적인 처리 기한이나 참고 가능한 일정조차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는 추가 자료 제출이 언제 필요한지, 과세당국이 제출 자료를 검토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그리고 각 단계별 피드백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심사 절차의 각 단계에 대한 일정의 명확화 또는 참고 가능한 마일스톤 제시가 이루어진다면,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납세자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APA 신청 절차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04 중소기업 또는 저위험 거래를 위한 간소화된 APA 제도

시행규칙 초안은 납세자의 규모나 대상 거래의 복잡성과 관계없이 단일한 APA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는 중소기업(SMEs)이나 저위험/제한적 기능 프로파일에 해당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보다 간소화되거나 신속한 APA 절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납세자들의 준수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과세당국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사안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소화 제도가 이번 시행규칙 초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최종안 확정 과정에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공백으로 보입니다.

## 05 이전가격 조정

시행규칙 초안은 APA 적용 기간 동안 납세자가 합의된 APA 가격에 맞추어 과세소득을 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을 실제로 어떤 방식과 절차에 따라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연도에 납세자의 이익률이 합의된 정상가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APA상 합의된 범위에 맞추기 위한 하향 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도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조정의 이행 절차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가 시행 전에 마련된다면 실무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향후 방향

시행규칙 초안이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명확화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바람직하겠지만, 특히 APA 절차의 간소화 측면에서 도입된 긍정적인 변화들은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동안 납세자들은 이미 제출한 APA 신청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2026년 7월 1일로 예상되는 시행일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Contact us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자문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Dinh Thi Quynh Van**  
Chairwoman  
[dinh.quynh.van@pwc.com](mailto:dinh.quynh.van@pwc.com)



**우정균 – 호치민 사무실**  
Director, Korean CPA  
+84 (28) 3823 0796 Ext. 4611  
[jungkyun.woo@pwc.com](mailto:jungkyun.woo@pwc.com)



**Judith Henry**  
Partner  
[judith.henry@pwc.com](mailto:judith.henry@pwc.com)



**위규영 – 하노이 사무실**  
Manager  
+84 (24) 3946 2246 Ext. 1011  
[wee.kyue.young@pwc.com](mailto:wee.kyue.young@pwc.com)



**Ngo Thanh Tin**  
Director  
[ngo.thanh.tin@pwc.com](mailto:ngo.thanh.tin@pwc.com)



[www.pwc.com/vn](http://www.pwc.com/vn)